

	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4. 08. 25
		최종개정일자	2022. 05. 09
		담당부서	교육혁신처 평생교육원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평생교육원(이하 “교육원”이라 한다)은 대학이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평등과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교육원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부설 평생교육원이라 한다.

제3조(소재지) 교육원은 대학 내에 둔다.

제2장 조 직

제4조(원장) ①교육원은 원장을 두며,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〈개정 2016.7.12〉

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,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5조(구성) ①교육원에 필요한 교직원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교학업무를 관장한다.

②교육원에 요양보호사교육원, BLS센터, 건설기계교육센터를 둔다. 〈개정 2022.5.9〉

③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〈신설 2016.7.12〉

④BLS센터 교육과정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〈신설 2022.4.18〉

⑤건설기계교육센터 교육과정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〈신설 2022.5.9〉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6조(위원회) ①교육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
제7조(임기)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

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기능)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설치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
4. 학습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
5.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6.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제9조(의결)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4장 설치과정

제10조(학습기간) 교육원의 학습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,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한다.

제11조(학습일수) 교육원의 주 학습일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12조(지원자격) 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, 특수한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력·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3조(선발방법) 교육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설치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4조(교육과정) 교육원의 교육과정과 학습인원 및 제15조의 학습비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.

제15조(학습비 및 강사료) ① 교육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준용한다.

③ 본원의 강사료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 <신설 2022.4.18>

제16조(수료 및 수료증 교부) ① 교육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교과목을 80%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<첨부 1>을 교부할 수 있다.

제5장 학습자 활동 및 포상

제17조(자치회) ①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총무 각 1인을 둔다.

제18조(학습자활동의 제한) 학습자는 교육원 학습기간 동안 교육원의 설립목적에 반하여

학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<개정 2016.7.12>

제19조(포상) 학습 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 시 포상할 수 있다.

제6장 회 계

제20조(회계년도) 교육원 회계연도는 대학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21조(예산편성) 교육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.

제22조(예산 및 결산) 교육원의 회계업무는 대학 예산 회계 업무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<첨부 1>

제 ○ ○ - ○ ○ ○ 호

수 료 증

성 명 :

생년월일 : 년 월 일

과 정 명 :

학 기 :

기 간 :

위와 같이 상기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.

년 월 일

목포과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원장 ○ ○ ○ (인)

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

목포과학대학교 총장 ○ ○ ○ (인)

<별표 1>

평생교육원 강사료 지급기준

구분	대상	강사료
일반과정	내부강사	1. 강좌별 강사료는 등록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등록인원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. (지급기준 : 1시간) 1) 15명 이하의 경우 시간당 강사료는 30,000원으로 한다. 2) 15명 초과 20명 이하의 경우 시간당 강사료는 35,000원으로 한다. 3) 20명 초과인 경우 시간당 강사료는 40,000원으로 한다. 2. 강사료는 총 수강료 수입(평생교육원 수강료 책정기준)의 60%를 넘어가지 못한다.
	외부강사	1. 내부강사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른다. 다만, 강사초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특별교육과정 및 위탁 교육과정의 강사료는 수입 범위 내에서 별도 총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급 할 수 있다.

<별표 2>

평생교육원 수강료 책정기준

구분	수강료
일반과정	1. 강좌별 수강료는 시간당 10,000원을 기준으로 하며, 총 시수를 곱한 금액을 수강료로 책정한다. - 단, 강좌의 특성상 수강료를 상·하향조정 해야 할 경우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한다. 2. 수강료를 계산 할 시에는 재료비를 포함하지 않고 수강료만 책정한다. - 재료비를 요하는 과정인 경우 별로 공지한다.